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3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24· 9·30 규칙 제777호

제1조(「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”을 “이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이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라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무형문화재”를 “무형유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무형문화재 보유자(이하“무형문화재”라 한다)”를 “무형유산 보유자(이하 “보유자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무형문화재”를 “보유자”라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무형문화재”를 “무형유산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무형문화재 보유자”를 “보유자”로, “무형문화재”를 “무형유산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무형문화재”를 “무형유산”으로, “선발나이”를 “선발 나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 부분 중 “무형문화재 보유자에서”를 “전수 전학생으로”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“무형문화재”를 “무형유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무형문화재 보유자”를 각각 “보유자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무형문화재”를 “보유자 및 무형유산 보유단체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무형문화재”를 “무형유산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제목 “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기준(제4조제2항 관련)”을 “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기준(제4조제2항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 제목 “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발나이(제4조제3항 관련)”을 “무형유산

전수 장학생의 선발 나이(제4조제3항 관련)”으로 하고, 비고란의 “무형문화재”를 “무형유산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제3호 중 “무형문화재”를 각각 “무형유산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무형문화재”를 각각 “무형유산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무형문화재”를 각각 “무형유산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이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사무전결처리사항(문화예술과) 제3호의 단위업무란 중 “문화재 관리”를 “국가유산 관리”로,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“문화재”를 각각 “국가유산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마목과 바목 중 “매장문화재”를 “매장유산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학예연구의 학예일반의 연구관·연구사란 중 “문화재관리학”을 “국가유산관리학”으로 한다.

별표 6의 제2호 시설의 건축란 중 “문화재수리기술자”를 각각 “국가유산수리기술자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